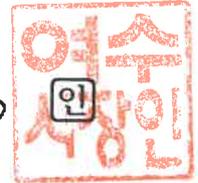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2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812호

붙임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12호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